

주주 귀하

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시 : 2012년 3월 30일(금) 오전 10시
2. 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-2번지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
※ 문의번호 : TEL (02) 3430-4038
3. 보고사항 :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④ 이익소각 종료보고
4. 회의 목적사항

제1호 의안 : 제17기(2011.1.1~2011.12.31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
※ 현금배당 예정내용 : 1주당 배당금 150원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별첨1)

제3호 의안 : 감사 선임(중임 : 이종팔 감사)의 건 (별첨2)

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
제5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
5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<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>

- 직접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-주주총회참석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어야 함), 대리인의 신분증

※ 주주총회 참석장을 받지 못하신 소액주주님들은 주주총회 참석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)

<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: ※ 실질주주만 해당>

-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 및 위임장 작성 안내

당일 참석하실 때에는 회의장 앞 접수처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신 후 입장하여 주시고, 위임하실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 기명날인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※ 위임장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3월 14 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-2번지

주식회사 브리지텍

대표이사 이 상 호

직 인
생 략

별첨1)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이유
제10조(신주인수권) ① (생략) ② (생략) 1**3(생략) 4.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	제10조(신주인수권) ① (현행과 동일) ② (현행과 동일) 1**3(현행과 동일) 4.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 주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	-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에 의한 자구 및 조문 수정
제11조의2(우리사주매수선택권)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 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 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 여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 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. ④ (생략)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. 다 만,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 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.	제11조의2(우리사주매수선택권)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 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 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 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동일) ③ <삭제> ④ (현행과 동일)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주 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 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 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.	-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에 의한 자구 및 조문 수정 -법령 개정으로 인한 한 도 폐지 -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에 의한 자구 및 조문 수정
제13조(주식의소각)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범위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 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 다.	제13조(주식의소각)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 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. ② <삭제>	-개정 상법 제343조제1항
<신설>	제20조의2(사채발행의 위임)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	- 개정 상법 제469조제4항
제32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 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 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한다. ② <신설>	제32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결은 출석한 주주의 5분의4 이상으로 하되, 발행주식총 수의 4분의3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1. 적대적 기업인수.합병(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.합병의 의도로 판 단될때도 포함)으로 인하여 최대 주주 등의 변경 이후 기존 이사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주주총회 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 2. 적대적 기업인수.합병(이사회 에서 적대적 기업인수.합병의 의 도로 판단될때도 포함)으로 인 하여 최대주주 등의 변경 이후 신규 이사에 대한 선임을 안건 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결	- 적대적 기업인수.합병에 대한 방어제도 도입

현행	개정(안)	개정이유
	<p>3. 적대적 기업인수,합병(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,합병의 의도로 판단될때도 포함)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변경 이후 회사의 정관개정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정관개정에 관한 의결. 단,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개정이나 동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신설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이나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</p>	
제34조(이사의 수)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.	제34조(이사의 수)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	-등기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의 수 개정
<신설>	<p>제39조의2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-개정 상법 제400조제2항,제415조
<p>제39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신설></p> <p>④ <신설></p>	<p>제39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기업인수,합병으로 인하여 실질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외에 퇴직 보상으로 대표이사에게 100억원, 각 이사에게 30억원을 지급한다.</p> <p>④ 제3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 후 발생한다.</p>	-적대적 기업인수,합병에 대한 방어제도 도입
<p>제41조(이사회 결의방법)</p> <p>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41조(이사회 결의방법)</p> <p>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</p>	<p>-개정 상법 제397조의2 신설 및 제398조의 개정</p> <p>-개정 상법 제391조제2항</p>
<p>제53조(제무제표 등의 작성)</p> <p>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대차대조표</p> <p>2. 손익계산서</p> <p>3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⑦ <신설></p> <p>⑧ <신설></p>	<p>제53조(제무제표 등의 작성)</p> <p>① 대표이사(사장)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대표이사(사장)는 상법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,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⑧ 대표이사(사장)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</p>	-개정 상법 제449조의2제1항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이유
	<p>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
<p>제56조(이익배당) ① 이익배당은 <u>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 ③ (생략) ④ <신설></p>	<p>제56조(이익배당) ① 이익배당은 <u>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</u> ② (현행과 동일) ③ (현행과 동일) ④ <u>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53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.</u></p>	<p>-개정 상법 제462조의4 -개정 상법 제462조제2항</p>
<p><u>부 칙</u> (시행일)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</p>	<p><u>부 칙</u> (시행일)이 정관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, 제20조의2, 제39조의2, 제41조, 제49조, 제53조,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적용 한다.</p>	<p>개정 상법의 시행시기가 2012년 4월 15일부로 정관의 개정내용 중 개정상법과 관련된 부분은 시행시기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도록 함.</p>

별첨 2) 제 3 호 의안 : 감사 선임(중임 : 이종팔 감사)의 건

● 감사 후보자의 약력

성명	추천인	주요약력	기 타	비고
이종팔	이사회	-1956년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現) 신우회계법인 現) (주)브리지텍 비상근 감사	- 최대주주와의 관계 : 관계 없음 - 당사와의 거래내역 : 거래내역 없음	중임